

국무조정실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734-8791~2 / 전송(02)733-6634
규제개혁3심의관실 심의관 구본영 과장 류충렬 담당자 김종문 사무관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1056

시행일자 1999. 8. 4.

받음 받는 곳 참조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 무 총 리
보 존			
조정관	✓	7/26/99	국무총리
심의관	5. 8. 4.		기획심의관: 2000. 7. 26. 2000. 7. 26.
과 장	2000. 7. 26.		
기 안	★ 김종문		협 조

제목 규제개혁추진 관련법령 조속정비 및 이행철저 등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국무총리지시 99-17호)

-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등에 의거, '98규제정비결과에 따른 법령정비등 후속조치와 개선법령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99.7.5~7.13)을 실시한 바, 후속조치지연이나 폐지된 법령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등 규제개혁이행실태의 부진사례가 상당수 지적되었음
- 금번 현장점검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규제개혁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아 래 -

규제정비관련 개정법령 집행등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조치

-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근거법령이 개정된후 이에따른 관련조례·규칙의 정비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규제에 대해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니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조례·규칙을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고, 조례·규칙 개정전이라도 법령개정내용과 다른 규제는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법령개정으로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법령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 바, 각급 행정 기관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교육등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용하거나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과다 징구하는 사례가 많은 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미근거규제는 즉시 정비(운용중단 및 폐지 또는 근거마련)하기 바라며, 법적근거 없이 과다 서류를 징구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철저히 강구할 것

-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점검결과 지적사례 등과 관련하여
 - 각 지적사례에 대해 관련기관이 집행중단, 규정개정 등 즉시 시정조치토록 조치해 주시고
 - 지적사례중 규제개혁 추진이 미흡한 기관과,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폐지·개선되었음에도 개정전 법령을 계속집행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민원인에게 손실·불편을 준 사례(별첨 : 개선 및 관련자 문책 필요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등을 엄중 문책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또는 계획)를 '99.9.15까지 각각 취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위 지시사항과 점검결과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업무 추진 독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조속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집행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집행기관에서 관련조례·규칙정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98년 규제정비 이후 규제의 신설이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자체규제심사시에 규제영향을 철저히 계량 분석하여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을 시에만 신설을 요청하는 등 규제신설에 신중을 기할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30일이내 규제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폐지규제 등의 등록이 지연되어, 규제등록사항을 수시로 열람하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폐지된 규제가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정부규제 통계의 불신이 우려되고 있으니 규제변경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 또한 '98년 규제정비계획에 이어 잔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99년 잔존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잔존규제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람

붙임 :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 가(06, 15, 16, 19, 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52, 53, 54, 55,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結果(2次)

’99 . 8

規制改革委員會
(國務調整室)

規制改革 履行實態 2次點檢 結果(要約)

□ 點檢概要

-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선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규제개혁 사후이행실태를 점검
- 점검기간 : '99.7.5~13(8일간)
- 점검대상 : 3개 광역시·도 및 12개 기초자치단체(15개 기관)
 - * 1차점검('99.4.19~24) : 7개 중앙행정기관,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8건의 부적합 사례 적발, 시정조치

□ 點檢結果

- 전반적으로 기관장 및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 법령미근거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례적으로 미근거규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
- 폐지되거나 개선된 규제를 대체로 잘 숙지하고, 후속조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 일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거나 법령개정 사실자체도 미숙지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 유형별 지적사례 : 91건

폐지규제 계속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용	과다서류 징구	후속조치 지연 등
27	30	25	9

▲ 자체규개위 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98.9 통보되었음에도 관련조례가 '99.6.30에야 지역 제정되고 아직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미흡(전남 순천시)

- ▲ 전문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면허로 민원처리(전남 해남)
 - 건설업 양도시 인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인가제 운영 (경북 칠곡)
- ▲ 출판사 및 인쇄업의 폐업신고가 폐지되었음에도 민원인의 신고서를 정구하여 신고수리 조치(대구 북구·중구, 대전 서구)
- ▲ 공장설립 승인시 법령에 정한 서류외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피해 방지계획도 등의 서류를 과다 정구(대전 서구, 충남 공주시)

□ 措置計劃

-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의 실질화 촉구
 -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집행기관의 신속한 후속조치 촉구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고센타 등 형식화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의지 촉구
 - 자체규개위도 구성 않는 등 개혁의지가 약한 순천시 : 기관 경고
 - 폐지된 규제운용 및 법령미근거규제 중단조치
 - 지적된 사항에 대해 운용 중단토록하고, 향후 폐지된 규제 재운영시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함
 - 법령미근거규제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운용중단 및 필요시 규제 심사를 거쳐 근거 마련토록 조치
 - * 지적된 사례를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 유사사례 자체정비 촉구
 - 주요지적사례에 대한 관련자 문책
 - 폐지된 규제 계속운영 등 민원인에 손실·불편을 주고, 직무태만 등 공직자의 잘못이 큰 사례에 대한 관련자 문책 실시
 - 조치계획 및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토록 조치
- ⇒ 국무총리지시로 시달

- 목 차 -

I. 점검개요	1
II. 점검결과 총평	2
III. 분야별 점검결과	3
1.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의지	3
2. 조례정비등 '98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	4
3. 폐지된 규제 계속운영 실태	4
4. 법령미근거규제 운용 및 과다서류 징구	5
5. 기타 건의사항 등	6
IV. 조치계획	7

I. 點檢概要

□ 點檢 目的

- ‘98년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점검체제’를 구성·운영중
 -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점검을 실시

* 1차점검 (99.4.19~24) : 7개 중앙행정기관,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8건의 부적합 사례적발, 시정조치

-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운용중단 및 재발방지방안 조치
- 관계자문책 : 중앙부처 소관 6건은 조치완료(징계3명), 기관경고 1건완료(의정부시), 기타 지자체소관 18건 조치 중

□ 點檢期間・對象

- 점검기간 : 99.7.5~13 (8일간)
- 대상기관 : 3개 시도 및 12개 시군구(15개 기관)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 대구(북구, 중구, 달성군), 대전(서구, 대덕구), 충남(공주시, 연기군), 전남(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경북(칠곡군)

□ 重點 點檢項目

- 각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법령정비 내용의 현장에의 반영 등 ‘98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 폐지된 법령미근거 규제의 계속운용 여부,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관행적 행정규제 운용여부
 - 폐지·개선된 규제의 교육, 행정집행 방식 등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
- * 규제개혁 건의사항 접수

II. 總評

- 전반적으로 機關長 및 職員들이 規制改革에 대한 必要性을 비교적 잘 認識하고 있고 規制改善에 대한 意志는 있으나
 - 법령미근거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례적으로 미근거규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
- 廢止되거나 改善된 規制를 대체로 잘 熟知하고, 後續措置에 노력하고 있으나
 - 일부 직원들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거나 법령 개정사실 자체도 미숙지 하는 사례 발생

< 點檢結果 概要 >

- 유형별 지적사항 : 91건

유형	폐지된 규제 계속 운영	법령미근거규제 운 용	법령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건수	27	30	25	9

- 기관별 지적사항 : 91건

- 광역자치단체(7)

기 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건 수	4	1	2

- 기초자치단체(84)

기관	대구중구	대구북구	대구달성군	대전서구	대전대덕구	충남공주시
건수	2	5	1	11	9	10
기관	충남연기군	전남순천시	전남구례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경북칠곡군
건수	10	11	4	6	8	7

III. 分野別 點檢結果

1. 機關別 規制改革 推進意志

- 대전시, 대구시,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체제는 구축된 것으로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위원회 개최실적이 평균 2-3회 정도에 불과하고, 규제신고센타의 신고접수, 처리실적도 저조한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됨

< 기관별 추진실태 >

- 대구광역시의 경우 누락규제에 대한 발굴노력 및 자체규제 정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행정부지사와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중심이 되어 규제발굴 및 정비(폐지율 50% 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진사례 >

- 전남 순천시의 경우 '98.9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99.6.30에야 제정되어 아직도 위원회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대한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2. 條例整備等 '98規制改革 後續措置 推進狀況

-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정비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야 함에도 개혁이 전의 업무관행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고, 후속조치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소홀한 경우가 있음

< 주요 지적사례 >

- ▲ 주차장법 및 동시행규칙이 99.3.12 개정되어 즉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전 서구, 전남 구례, 순천)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령이 98.5.7 개정되었음에도 수렵강습 운영규칙을 미개정(전라남도)

3. 磨止된 規制 계속 運用事例

- 이미 폐지된 규제는 즉시 그 운용을 중단해야 하나, 관련 내용 미숙지 또는 관행적으로 이를 계속 운용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음

< 주요 지적사례 >

-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종전의 면허제로 업무처리(전남 해남)
- ▲ 농약관리법상 농약판매업 등록기준중 면적시설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적용 민원처리(대전 서구)
- ▲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상 출판사 및 인쇄업의 폐업신고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서를 받아 민원처리(대전 서구, 대구 북구, 중구)
-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99.4.19 폐지(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되었음에도 위 확인을 첨부하여 민원처리(충남 공주)

4. 法令未根據 規制 運用 및 過多書類 徵求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미근거 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하였지만, 이번 점검 결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용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지적 되어 지속적 점검과 자체적인 추가발굴이 요구됨

< 주요 지적 사례 >

- ▲ 공장설립승인을 함에 있어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인간증명서, 실측평면도, 공장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 조경계획도 등을 징구(충남 공주시)
- ▲ 의료법시행규칙상 안마시술소 신고처리에 있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시술실 3실당 1인이상의 안마사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임의로 추가하여 시설기준으로 운용 (대전 서구)
- ▲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허가조건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미근거규제 운용(충남 공주시)
-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시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설립자의 이력서, 운영규정, 회 원명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토록 규정하여 운용 (대구 북구)
-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법령에 근거없이 지방경찰청장발행 무사고 운전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면허발급시 개인택시조합 가입의무를 조건으로 부여(대구광역시)
- ▲ 폐기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매립 승인시 법령에 근거없는 인근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함(전남 구례)
-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하천공작물 신축허가시 법정구비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징구(전남 순천)
- ▲ 영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규칙상 놀이방 설치신고 및 신고증 교부와 관련하여 법령구비서류 이외에 교원자격증 사본 및 아파트 양쪽 이웃 호수의 놀이방 개설 동의서를 징구(대구 북구)

5. 其他 建議事項 等

- 현지 공무원들의 건의사항 또는 제안이 다수 있었는 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향후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토록 할 것임

< 주요 건의사항 >

- ▲ 중앙부처 법령개정, 시도의 자치법규 개정시 개정과 동시에 조속한 준칙안 시달 요망(대구광역시, 대구 달성군)
- ▲ 위임사무의 규제는 중앙부처에서 규제영향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입법화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음에도 위임범위내에서 규제사무를 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규제영향평가분석을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규제에 한해서만 규제영향평가분석을 하도록 개선 요망(구례)
- ▲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라는 현 상황에서 규제개혁전담 팀구성 및 인원보강 조치 요구는 담당실과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부처(행정자치부 조직관리부서)에서 한시적으로(2000년) 전담인력 보강 지시가 이루어 졌으면 함 (전라남도)
- ▲ 실상 각 자치단체 자치법규상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사항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규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처차원에서 규제개혁 추진사항 등을 홍보하여 주였으면 함 (전라남도)
- ▲ 현재 공장기준면적율(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은 제조업 업종별로 5~30%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공장면적율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 요망 (해남)

IV. 措置計劃

□ 機關別 規制改革 推進의 實質化 促求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고센터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개혁 의지를 촉구
 - 자체 규개위 구성도 않는 등 규제개혁의지가 약한 순천시 : 기관경고
- 규제개혁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 촉구

□ 繳止된 規制 繼續運用 및 法令未根據 規制 中斷措置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 중단토록 조치하고, 향후 폐지된 규제를 재차 운용할 경우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리도록 함
- 법령미근거 규제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즉시 운용 중단시키고, 부득이 계속 존치시킬 규제도 일단 운용중단후 규제영향 분석 등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 마련토록 조치
- 지적된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 유사사례를 자체정비토록 촉구

□ 主要 指摘事例에 대한 關聯者 問責

-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한 사례중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거나, 공직자의 잘못이 큰 사례는 관련자 문책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